

##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Legislation against North Korea's Terrorism

이 제 영\*\*

####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테러에 관한 논의의 전제
- III. 북한테러의 특징 및 가능성
- IV. 북한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V. 결 론

####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에 의한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테러 공격을 경험해 왔다. 분단 이후 그동안 북한에 의한 대남공작은 그 자체가 바로 일련의 테러범죄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여 체제 내부의 결속을 추구하거나, 국제정세 가운데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테러행위를 자행해 왔다. 또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부자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2012년으로 공언되어 온 강성대국 건설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테러행위를 감행할 우려를 배제할

\* 논문제출일: 2010.11.01. 논문심사일: 2010.12.03. 게재확정일: 2010.12.2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수 없다. 북한의 테러행위는 전통적 방식의 테러리즘에서 탈피하여 각종 대량살상 무기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 도발행위 등 뉴테러리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테러발생 경험과 향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사전적 준비를 위한 근거법률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정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한 시급한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남북한의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해 볼 때 하루 빨리 테러예방을 위한 법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테러방지법, 대테러정책, 뉴테러리즘, 테러지원국가, 대응전략

## I. 서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에 의한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포함시킨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테러공격을 경험해 왔다. 그동안 북한에 의한 대남공작은 그 자체가 바로 일련의 테러범죄였다고 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 및 폭파사건,<sup>1)</sup> 요인암살 및 암살시도,<sup>2)</sup> 주요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사건<sup>3)</sup> 등이 이미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명백한 공격 목표로 하여 감행되어 온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흔히 말하는 ‘테러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이면서 UN에 각기 따로 가입한 별개의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격을 가진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공격은 이른바 ‘국가에 의한 테러’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국가에 의한 테러를 전형적인 테러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이 있어왔다.

물론, 테러범죄 자체에 대해서도 정립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테러를 테러범죄에 포섭할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sup>4)</sup> 하지만 테러범죄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다양한 국제조약의 국내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적’ 행위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 
- 1)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 2) 1968년 청와대 습격사건, 1974년 대통령 부인 저격사건, 1983년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
  - 3) 19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사건.
  - 4) ‘테러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가 도출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테러 관련 범죄’를 최초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공중협박자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살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라고 정의하여 우리 법에서의 ‘테러범죄’의 개념 해석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 4. 송영선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은 ‘테러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와 연계한 범죄행위 또는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살인 등)”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북한에 의한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테러범죄’에 포섭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최근까지 이어져 온 남북 대치상황에 비추어 향후 그러한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떠한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 것이 될지를 논의해 보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률적 측면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II. 북한테러에 관한 논의의 전제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 분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이러한 어려움은 테러리즘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배경과 테러조직의 형태 및 그 구성원들의 특성, 테러활동의 다양한 양상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다. 북한의 테러행위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역시 국가개입 여부에 따른 테러개념의 분류방식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개념을 국가개입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특정정부의 통제나 지휘 여부라는 기준과 1개국 이상의 국민 또는 영토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크게 국가간 테러리즘, 국내테러리즘, 국가테러리즘, 초국적 테러리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Micklous, 1978: 127-129).

여기서 자국 내에서의 테러리즘(미국의 Eco-Terrorism, 중남미의 Narco-Terrorism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을 의미하는 국내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 개념을 차치할 때 우리가 흔히 테러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은 ‘어느 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적을 초월한 개인 또는 테러단체가 국제사회에서 자행하는 테러리즘 행위’를 의미하는 초국적 테러리즘(Transnational Terrorism)일 것이다. 알카에다, 탈레반의 각종 테러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공격행위가 ‘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소간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북한의 행위가 위의 전통적 테러개념, 즉 초국적 테러리즘의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 의한 각종 공격행위를 국가간 테러리즘, 국가테러리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를 테러범죄의 개념에 포섭시키지 못할 까닭은 전혀 없다. 먼저, 국가테러리즘(State Terrorism)이란 자국 내에서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테러리즘을 말하며 1930년대의 소련의 숙청과 경찰국가의 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북한의 인권상황, 세습독재체제 등을 감안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국가테러리즘 양상

을 보이는 국가 중의 하나로 북한을 지명하는 데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테러리즘 문제는 장차 남북통일 이후 이른바 ‘체제불법’ 청산의 문제로 다루어질 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개념은 바로 국가간 테러리즘(Interstate Terrorism)이다. 어느 국가의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타국의 국민이나 영토에 관련하여 행하는 테러리즘 행위를 말한다(오태곤, 2006: 375).

물론, 국가간 테러리즘의 개념은 제3세계 국가, 중동국가 등에 의해 대테러 활동을 구실로 한 미국의 군사적 행위, 팔레스타인 그룹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의해 국가간 테러리즘을 ‘테러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비토(veto)되어 온 것도 어느 정도 사실<sup>5)</sup>이다.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논하지 않더라도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 측의 테러 공격은 북한 당국의 지시 내지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테러리즘의 개념이야 말로 북한의 테러행위를 규정할 가장 정확한 개념이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기존 정찰국과 조선노동당 산하 ‘35호실’, ‘작전부’ 등 대남·해외 공작기구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공격행위의 전위부대가 되었던 조직을 통합하여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한 후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각종 간첩행위, 해상 도발행위 등을 자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비군사적 공격행위를 테러의 일종으로 논함에 있어 국가간 테러리즘의 개념을 부정하거나,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아래에서도 국가간 테러리즘의 일종으로서 북한의 테러행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5) 1937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을 통해 최초로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도출을 시도하였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정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2년 이래 수많은 테러리즘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UN 총회에서 모든 테러리즘의 방법,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최초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당시 시리아를 포함한 일부 아랍 국가들도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들 국가들도 이 결의안이 국가테러리즘을 구체적으로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한 바 있다.

### Ⅲ. 북한테러의 특징과 유형 및 가능성

#### 1. 북한테러의 특징

북한이 그동안 전개해 온 테러리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의 테러리즘은 국가의 직접 지원 하에 이루어진다(김태준, 2002: 194-195).

북한은 아직까지 포기한 바 없는 적화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조선로동당과 군을 중심으로 특수공작요원의 훈련 및 그들에 대한 자금, 전략, 전술 지원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 둘째, 북한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목표는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남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에 대한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 내의 여론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를 이끌어 내는데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혁명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폭력수출이다. 북한은 1966년부터 중남미, 아프리카 등 35개국에 테러리스트 훈련조직 및 고문단을 파견하여 게릴라, 테러훈련을 지원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1994년경까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의 테러교원들로부터 교육 받은 테러리스트의 수는 대략 5,000명 내지 8,000명에 이른다. 북한의 이러한 테러수출 행위는 급기야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에 의한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 테러지원국 지정 등으로 귀결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이현경, 2009: 141).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자신들의 내부 정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북한은 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불만에 대한 해소책으로써 외부, 특히 남한에 대한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중동원과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펼쳐 왔으며, 나아가 전쟁발생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 조성 시도도 계속하여 왔다(이만중 외, 2010: 32-33).

## 2. 북한에 의한 테러 발생의 가능성

### 1) 북한테러 발생 가능성을 가늠할 주변 상황

#### (1) 정찰총국으로의 테러기지 일원화

북한은 2009. 2.경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정찰국과 조선로동당 산하의 35호실, 작전부 등 대남·해외 공작기구를 통합하였으며, 정찰총국은 편제상 인민무력부 산하에 속해 있으나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직보하는 공작기구로 추정된다. 정찰총국장에는 기존의 정찰국 국장 김영철(64세)이 임명되어 김정일(국방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영철(정찰총국장)로 이어지는 대남공작활동 지휘체계로 재편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남공작 활동이 노동당과 군부로 분리되어 충성경쟁 등 비효율성이 노출된 것과 관련하여 획일적이고 신속한 공작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그동안 대남·해외 테러 공작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노동당 35호실, 작전부 등을 노동당에서 떼어내 정규 군사조직으로 통합한 것으로서 바야흐로 북한의 테러기지가 일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찰총국의 편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작전부는 공작원 양성 및 육·해상 침투·복귀 호송 안내를 맡는 1국으로, 기존의 정찰국은 군사정찰, 군 심리전을 맡는 2국으로, 기존의 작전부는 공작장비 개발·제조를 맡는 3국으로, 구 35호실은 공작원 우회침투, 대남·해외 정보수집을 맡는 5국으로, 기존의 615국은 대남 군사정책, 군사회담을 맡는 6국으로 재편되었고, 보급 등 후방지원을 맡는 7국이 신설되었다. 일견하더라도 정찰총국 산하의 각 국의 역할이 각종 테러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가능성이 뚜렷하다.

정찰총국이 북한의 테러기지화 될 우려는 그 전신인 정찰국의 주요 임무와 그간의 공작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구 정찰국은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군사정찰·정보수집, 군 계열 간첩 양성·남파·복귀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였으며, 그 임무의 일환으로 앞에서 살펴 본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1995년 10월 경기 문산 무장간첩 침투, 1996년 강릉 무장간첩 침투사건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이러한 공작기관 재편으로 인해 이전까지 노동당 소속의 공작기관들이 어느 정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남공작활동의 완급과 폭을 조절하였던 것에 비해 향후 군부 소속으로 ‘정치논리’보다는 ‘군사논리’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 관계와 맞물려 대남 군사·공작활동 강화로 이어질 우려 또한 농후하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이 한반도 긴장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발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북한군 정찰총국 예하에 특수부대로 조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하고(뉴스한국, 2010.11.04. 기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또한 2010. 3.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 등을 들어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2) 한반도 정세에 따른 테러발생 우려의 연동

북한이 남북한 간의 정세구도를 재편하거나, 남한의 사회혼란을 획책하기 위해 테러공격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을 1주일 앞두고 발생한 김포공항 폭탄테러, 1988년 올림픽 방해를 위해 수개월 전인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인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2차 서해교전은 그 사례들이라 할 것이다(노호래 외, 2004: 140-145).

북한은 2010. 9.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출범시켰다. 20대 후반의 김정은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권력의 중심에 올랐고 있으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군부는 취약한 권력기반을 염두에 둔 채 북한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 경력이 전무한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3대 세습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점 또한 현재 북한 정권이 의지할 곳은 군부의 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선임연구원 폴 스테이어스는 최근 발표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앞으로 12~18개월 안에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뉴데일리, 2010.11.12. 기사),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일이 지난 197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도 권력세습 과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도발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그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고화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응해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관심사를 외부로 돌리려는 노력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되어 온 남북관계 가운데

데에서도 주목할 시점은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선언한 2012년이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탄생 70주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 완결의 해로 선언하여 왔으며, 국내 일부 중북좌파 세력들 또한 공공연히 2012년을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재편의 시점, 즉 그들만의 ‘통일의 해’로 삼는 언동을 하여 왔다. 아울러,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주석의 임기 만료로 한반도 주변 거의 모든 국가의 정치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인바, 2012년까지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연동된 북한의 테러공격 감행 가능성은 실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발생 가능한 북한의 테러공격

### (1) 남한 내 기반시설 등에 대한 테러가능성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도 북한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테러 공격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감행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테러 공격 가능성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안으로는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민심이반과 밖으로는 주변 강국들에 의한 정치·외교적 압력 등으로 인해 남한에 대한 체제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전쟁준비를 통해 내부의 긴장감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미봉남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남한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비타협적이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만일 북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한사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유도하여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무력통일의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면서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방도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전략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바로 테러리즘일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벌일 수 있는 테러공격 중 지금까지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면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리즘의 한 방안은 자체의 특수 공작요원을 이용한 테러공격이다. 북한은 이미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6년 김포공항 폭파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을 통해 고도의 훈련된 특수공작요원들에 의한 테러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노호래 외, 2004: 140-145).

주목해야 할 점은 급증하는 탈북자와 조선족 근로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북한 특수공작요원 또는 북한의 간첩이 탈북자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가장하여 국내로 잠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0년 11월을 기해 탈북자 수는 드디어 2만 명을 돌파하였고(이는 북한 인구 1천 명 중 1명이 탈북한 것과 같은 수치이다), 지금도 월 평균 200여명이 탈북자 대열에 합류하여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시피 이미 올해 들어 탈북자로 위장하여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중 3명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살해 지령을 정찰총국장 김영철로부터 직접 수수한 후 잠입한 정찰총국 공작원이었고, 1명은 조선족으로 가장하여 중국에 머물다 탈북자를 위장하여 들어온 여간첩이었다. 향후 탈북자 또는 조선족을 위장한 북한 공작요원의 남파, 또는 이념의식이 부족하고 남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의해 북한 또는 남한 내 고정간첩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조선족에 의한 안보위해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특수공작요원들과 연계된 국제 테러조직을 이용한 테러리즘이다.

북한이 직·간접, 유·무형의 방법으로 국제테러 조직을 지원해 오거나, 그들과 연계해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60여개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이은재 의원은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라덴과 거래했다는 정보가 지난 7월에 보고되었으며, G20 정상회의 전에 대남테러공작을 위해 알카에다 조직과 북한이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알카에다 조직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아시아경제, 2010.11.05. 기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또한 2010년 11월 10일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유엔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여 매년 1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미사일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 불법 수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동남아, 중동 등 이슬람권 입국자 5만여 명 중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등의 특이 동향자 90여명을 집중 관리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상반기에는 탈레반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파키스탄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 국내 거주 일부 무슬림인들 간에는 미국에 대한 투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사회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과 무슬림 근로자들이 늘어갈수록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일정한 자극이 있을 경우 두 세력이 연계된 테러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주로 북한의 ‘뉴테러리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북한에 의한 전통적 방식의 테러리즘, 또는 군사적 도발 형태의 테러리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의 천안함 사건을 보더라도 북한이 국지성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모종의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위해 폭탄테러, 요인암살 등의 테러범죄를 감행할 우려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도 검찰은 북한 보위부 소속 여간첩에게 서울 지하철의 각종 기밀문건을 건네 준 한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한 바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북한이 과거에도 지하철 간부의 간첩사건에서 철도를 “남조선 핵심시설”로 중시하고, “유사시 철도를 장악하여 남한을 교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린 바 있는 등 북한의 각종 정보수집행위가 테러에 대한 일종의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보일 정황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 (2) 핵, 생화학, 디지털무기를 활용한 테러가능성

### 가. 북한의 핵 테러 가능성

북한당국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미국 핵전문가를 통해 그들이 영변 경수로의 우라늄농축 설비에 구축한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설비를 통해 북한은 1년에 우라늄탄 1개씩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분석되며, 나아가 향후 원심분리기의 성능 향상과 추가 설치를 통해 우라늄탄 양산체제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은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외교적 지렛대를 삼았던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우라늄 핵개발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였다(연합뉴스, 2010.11.22. 기사). 확실한 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체제수호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할 의도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3차례의 재처리 작업을 통하여 40여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한미 정보당국과 각 국가의 핵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상이하지만, 북한이 40~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6~8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0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핵-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과 그 대책 방안의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IAEA 사무총장인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는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대테러(counter-terrorism) 활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하면서 핵-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와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핵-테러리즘은 핵무기 공격,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 방사능 물질 밀반입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1차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하였다가, 2차적으로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고, 미국과 북한의 합의로 탈퇴를 보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을 완전히 탈퇴하였다(오테곤, 2006: 386-387).

이로써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에 최초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벗어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핵물질 또는 핵관련시설에 대한 테러리즘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은 현재 고리 원자력본부의 4기, 영광 원자력본부의 6기, 울진 원자력본부의 6기, 월성 원자력본부의 4기를 포함해 총 20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다. 또한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신고리 원전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신울진 1, 2호기로 총 8호기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방사능을 누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 특수 공작원에 의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을 노린 핵-테러리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김상겸 외, 2009: 78-79).

#### 나. 북한의 생화학 테러 가능성

사람의 신체나 동식물에 해로운 미생물·생물체·독소·질병매개물을 이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치사 및 무능화시키는 생화학무기는 종래의 테러 수단과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생화학무기는 가장 편리하게 소지하거나 용이한 사용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크고 증거인멸이 용이하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 또한 생화학 무기를 비롯한 뉴테러리즘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김상겸 외, 2009: 80).

북한은 1980년대에 세균 배양 실험에 성공하여 1980년대 말부터 생체 실험까지 완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존 볼튼(John R. Bolton)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생물무기협약 제5차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세균전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무기의 대량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화학전 선언에 따라 연구 및 생산시설을 통한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화생방무기 개발에 주력하여 화학무기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무기의 경우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가스 등 약 2,500~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8개의 생산시설과 6개소의 저장시설에 분산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오태곤, 2006: 386). 또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세계 제3위에 해당되며, 생화학무기 생산능력도 평시에는 4,500톤 전시에는 12,000톤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현경, 2003: 77).

북한이 240mm 장사거리 방사포 100대에 15톤의 사린을 탑재해 서울을 향해 발사할 경우 발사량의 60%만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해도 최소 4만6천 명에서 최대 46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스커드 미사일을 사용해 서울 이외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인천과 같은 대도시를 공격할 경우 인명 피해는 더욱 급증한다. 국방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전쟁 한 달 만에 219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전쟁을 시작한 후 3일 동안은 전방에 740톤의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뉴스한국, 2010.07.30. 기사).

국내 일부 언론은 얼마 전 북한이 해킹을 통해 서울시 상·하수도 관련 정보를 빼내간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보도에 인용된 우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IP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2010. 10. 중순경 환경부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서울시 상·하수도망과 국내 독극물 유통량 등의 정보가 담긴 ‘2009년 환경통계연감’을 다운로드하였다(중앙일보, 2010.10.20. 기사). 후술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능력과 다른 공격수단이 결합할 경우의 위협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2009년 7월 7일 국내의 청와대, 국방부 등과 미국의 26개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북한 체신청 IP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삼시간에 한미양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이버테러 공격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일 시	공격 대상
2009.07.05~06.	미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언론, 포털 등 20여 개 사이트에 대한 DDoS 1차 공격 발생
2009.07.07~08.	청와대, 국방부, 백악관 등 한미 26개 사이트에 대한 DDoS 2차 공격 발생, 피해 본격화
2009.07.08~09.	국가정보원, 안철수 연구소 등 14개 사이트 대상 DDoS 3차 공격 발생
2009.07.09~10.	전자민원 G4C, KB국민은행, 옥션 등 7개 사이트 대상 DDoS 4차 공격 발생
2009.07.10.	DDoS 공격 유발 악성코드, 개인 사용자 PC 데이터 파괴 시작
2009.07.15.	정부 사이버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1단계 하향 조정, DDoS 공격 종료

북한은 인터넷상의 공간을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이에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등에서 국가차원의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에 대비한 사이버 테러리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컴퓨터망 해킹 및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리즘 교육기관으로 1981년 김일성의 지시로 미림대학을 설립하였으며, 이 대학은 1986년 이후 평양 자동차 대학으로 개칭되면서 구소련 국방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 대학은 1990년대 초기에 김일 군사 대학으로 또 다시 개칭된 후에 매년 100여명의 사이버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의

김일 군사대학은 북한의 컴퓨터 관련 대학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대학으로써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일본에서도 통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고도의 컴퓨터 제어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능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김상겸 외, 2009: 83).

## Ⅳ. 북한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1. 개요

테러범죄에 적용할 실체법적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 또는 그 외의 특별법규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대부분의 테러범죄에 대한 의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문한, 2005: 385).

먼저, 형법은 제6장 및 제13장에서 폭발물에 관한 죄를, 제4장에서 제한적이거나 외국 요인에 관한 테러범죄의 가중처벌을, 제37장에서 인질 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서는 열차테러와 관련된 조항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에서는 상수도를 이용한 생화학 테러범죄를 처벌할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기타의 특별법규 중 테러범죄 의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가운데에서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항공기 및 선박 관련 테러범죄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과 원자력법 등을 통해 핵 테러리즘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2008년 12월 신설된 공중 등 협박목적에 의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테러자금의 제공 및 운반 등 테러 선행범죄로서의 자금이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테러범죄 규율 조항은 북한에 의한 테러뿐만 아니라 모든 테러범죄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조항들이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테러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론, 대부분 최초 제정 당시부터 테러범행에 대처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테러조직과의 연계 또는 테러목적성이

인정되는 테러범죄의 구성요건들을 단일화된 법률로 통합, 재정비한 후 가중 처벌하는 대테러 실체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테러방지법의 제정과는 또 다른 영역의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단 실제 테러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대처를 위한 종합법률로서의 테러방지법과 특히 북한에 의한 테러범죄를 의율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테러방지법의 제정

### 1)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테러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대통령 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 뿐이고, 테러 발생 시의 구체적인 대응은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곽영길, 2008: 95-96).

하지만, 이러한 특별법규나 훈령만으로는 행정기관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예방·방지·저지 등의 종합적인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며, 동 지침에 의거하여 구성될 ‘대테러대책위원회’ 등 관련기구 또한 유명 무실화되어 있는 형편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테러활동의 컨트롤 타워는 없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테러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하며 현행 충무계획 또한 전시법령에 의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테러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뉴테러리즘과 같은 동시다발적·대규모의 테러사태 발생 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나아가 정보수집 및 수사의 효율·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테러 법률안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국회에는 2009. 4. 15.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나 소관 상임위조차 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계류 중인 위 법률안은 국내 유일한 종합법령으로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조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법률안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제영, 2008: 258). 물론, 국가 대테러 활동의 기본적인 지휘체계를 훈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위 법률안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 수행이나 테러사건 수사, 테러정보 공유 등을 위한 실제적인 규정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토론은 대테러 활동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 보다는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존의 기관에 어떠한 법률적 도구를 부여할 것인지, 그러한 도구가 남용될 여지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등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3. 국가보안법에 의한 테러 대응

#### 1)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반국가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 해당한다는 점은 우리 법원에서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북한의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활용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최근까지도 일관된 법원의 태도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합헌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명백한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의 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동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바, 이는 북한 특수공작요원에 의한 테러범죄, 북한과 연계된 해외 테러세력의 테러범죄,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한국인의 테러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제3호에 의해 형법이 적용되는 테러범죄 중 폭발물 테러(제119조제1항), 상수도 등에 대한 생화학테러 등(제192조 내지 제195조), 살인(제250조제1항)에 해당하는 테러범죄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4호는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 또한 폭발물 테러 또는 인질 관련 테러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5호에 의해서는 일반적인 테러범죄로 인해 상해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 (2)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

제5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북한에 동조하여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테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제2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북한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운반한 자에 대해 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제8조 회합·통신, 제9조 편의제공의 죄, 제10조 불고지의 죄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의한 테러범죄에 대응하는데 적용할 경우 그 외 테러분자들의 일반적인 테러공격에 비해 그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의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테러범죄를 위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일 것이나, 위 각 조항을 통해 테러범죄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행위, 테러범죄를 모의하기 위해 북측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 북한의 테러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 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4) 국가보안법상의 특별형사소송규정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행을 위한 법률적 도구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국가보안법 제3장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된 특별형사소송 규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있어 일정한 착안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8조는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적이나마 참고인구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제19조는 일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 규정된 공소보류 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된 북한테러공격에 있어 공범들 간의 분리를 통한 사건 실체파악에 활용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론 검토

한편, 최근 학계 일부에서 탈냉전 이후 군사적 위협에 치중하였던 전통적 안보개념을 탈피하여 군사적 측면 이외로의 안보영역 확대를 가정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주장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론을 주장한 견해(이상현 외, 2007: 117-118)가 있기에 여기에서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위 주장은 기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되는 포괄적 안보위협 요인으로서 테러리즘, 사이버테러,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 유출 등을 제시하면서 그에 관한 대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만으로 규정된 법적용대상을 반국가단체 이외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이 경우 ‘외국’에는 적국, 우방국, 중립국 모두를 포함할 것,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 개념 추가를 통해 테러조직, 초국가적 조직범죄, 반정부조직 등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범죄로부터의 국가안보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앞서 살펴 본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의 죄에 있어 그 적용대상에 정치·이념적 측면의 테러리즘, 사이버테러, 그리고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범죄행위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와 관련하여서도 정치·이념적 측면의 테러리즘과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자금차단 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북한에 의한 테러범죄에 국한되는 주장은 아니나, 국가 대 테러 활동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효율적이고 철저한 테러범죄 처벌을 위한 개정까지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V. 결 론

대한민국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여기는 것은 그동안 북한에 의해 경험되어 온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테러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이다. 북한은 그 탄생부터 폭력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테러리즘 정책노선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연령별·학력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240명의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반 이상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누구에 의한 것일지”라는 질문에 북한을 지목한 점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북한에 의한 테러의 위협성이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여준다(오세연 외, 2010: 98).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여 체제 내부의 결속을 추구하거나, 국제정세 가운데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테러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현재 또는 앞으로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2012년으로 공언되어 온 강성대국 건설의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종 테러행위를 감행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의 북한의 테러행위는 비교적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판단이 수월하였던 과거 전통적 방식의 테러리즘에서 탈피하여 각종 대량살상 무기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 도발행위 등 이른바 뉴테러리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정책적·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시급한 모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곽영길. (2008), “뉴테러리즘의 현황과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8-104.
- 김상겸·이대성. (2009),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 「통일정책연구」, 18(2): 67-96.
- 김수민·윤 황. (2009), “북한정권과 중동 테러단체의 테러 유형과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53: 57-85.
- 김태준. (2002),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45(1): 193-227.
- 노호래·이대성. (2004), “북한에 의한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통일정책연구」, 13(1): 135-162.
- 박동균. (2009),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1): 81-111.
- 오세연·김학범. (2010), “테러의 위험성과 국가대응체제에 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3(1): 83-113.
- 오태곤. (2006), “뉴테러리즘 시대 북한테러리즘에 관한 공법적 검토”, 「법학연구」, 21: 369-392.
- 이만중·김강녕. (2010),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비전략”, 「한국테러학회보」, 3(1): 7-52.
- 이문한. (2005), “테러방지법 정비 방안 및 그에 따른 검찰의 역할”, 「연수검사 논문집」, 21: 377-414.
- 이상현·이대성. (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6(2): 97-121.
- 이재영. (2005), “최근 테러리즘의 동향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의 대테러리즘 법률 입법론과 관련하여”, 「검찰」, 116: 44-81.
- \_\_\_\_\_. (2008), “미국의 Counter-Terrorism 수사기구와 수사 현황”, 「연수검사 논문집」, 23: 255-328.

이헌경. (2003),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북한연구학회보」, 7(1): 65-82.

\_\_\_\_\_. (2009),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재지정 여부 진단”, 「한국동북아논총」, 53: 131-149.

### 《국외문헌》

Edward, F. Micklous. (1978), *An Events Data Base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Terrorism*, in Richard J. Heurer Jr. (ed), *Quantitative Approaches to Political Intelligence: The CIA Experie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Abstract】

## **A Study on Counter-Measures of the Legislation against North Korea's Terrorism**

**Lee, Jae Young\***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area from terrorism. However,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one of terror support nations in this year as well as the current in a report on Terror Support Nation.

At this point,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crimes of terrorism on Koreans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there is also a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new terrorism developments by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power and terrorism tactics to reach its ambition of communist unification.

The possibilities of terror attacks leveled at South Korea can be classified. Terror attacks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grumbling over the government's policies.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and fourth, method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were discussed.

**Key Word: Protection Law against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New Terrorism, Terror Support Nation, Counter-Measures**

---

\* Prosecutor,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